

충청북도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충청북도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 원감희 의원 등 7인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 2021년 11월 10일
- 회부일자 : 2021년 11월 15일

3. 제안이유

-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수수료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도록 하고, 시험 등의 신청기간 제한 규정을 삭제함
- 물가 변동 등에 따른 시험·분석 수수료를 현실화함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미비한 조문을 수정·보완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4. 주요내용

- 시험 등의 의뢰 신청기간을 수시로 변경함(안 제4조)
- 수수료 및 시험에 필요한 경비는 농촌진흥청 고시를 준용하도록 규정함(안 제11조제4항)
- 수수료 및 필요 경비의 납부방법을 다양화 함(안 제11조제5항)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미비한 조문을 수정·보완함

5.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박노학)

가. 제출배경

- 수수료를 수입증지 외에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전자정부법」 등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시험의뢰 시기의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수시로 신청 가능하도록 하는 등 민원인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함
- 시험·분석 수수료 및 필요경비에 대하여 농촌진흥청 고시 금액을 적용하도록 변경하여 물가 변동 등에 따른 수수료 현실화를 기하고자 함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미비한 조문을 수정·보완하고자 함

나. 주요 검토내용

- 안 제4조는 시험의뢰를 수시로 신청 할 수 있도록 변경함
 - 현행 조례에서 시험의뢰는 여름작물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겨울작물은 6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제7조제1항제1호에서는 ‘대상물품의 시험목적 및 성격상 대상작물 재배시기가 부적합할 때’ 시험 등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따라서, 시험의뢰 신청기한은 수시로 변경하고 작물 재배시기의 적합성을 따져 시험을 진행하는 것은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 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11조제4항은 수수료 및 시험에 필요한 경비를 농촌진흥청 고시 금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함
 - 「지방자치법」 제137조제1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하고, 제139조제1항은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하고 있어 상위 법령에 모순되거나 저촉되지 않음
 - 현행 조례 별표2에서는 시험의뢰수수료와 분석의뢰수수료를 규정하고, 별표3에서는 시험경비를 규정하고 있음

- 조례와는 별도로 「농촌진흥청 시험·분석 및 검정의뢰 규칙」에 의한 농촌진흥청장이 고시(이하 고시)로 정하는 시험 및 분석의뢰 수수료, 필요경비가 별도로 존재하여 왔음
-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타 자치단체 수수료 등의 적용 기준은 아래와 같음

☞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8개 광역자치단체의 수수료 적용 기준을 살펴보면**

- 농촌진흥청 고시 적용 : 경기, 강원, 충남, 전북, 경남, 제주
- 기타 : 조례 별표 규정(경북), 도지사 고시(전남) → 농진청 고시 금액과 동일

- 우리도의 경우 1999년 이후 시험 및 분석의뢰 수수료 및 필요경비에 대한 변경이 한 차례도 없었으므로, 늦은 감이 있으나 물가변동 등에 따른 수수료, 필요경비를 현실화하기 위해 농진청 고시금액을 적용하도록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안 제11조제5항은 수수료 및 필요경비의 납부방법을 현행 수입증지에서 수입증지, 현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도록 다양화함**

- 이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1) 및 「전자정부법」 제14조2)에 따라 법령 취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 효율성 및 민원인의 편리성 측면에서도 본 개정안은 타당함

다. 종합 검토의견

- 주민편의를 위해 수수료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상위 법령의 취지에 맞지 않은 규정을 개정하고, 물가 변동 등에 따른 수수료를 현실화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민원수수료 등의 납부방법)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민원인이 현금·수입인지·수입증지 외의 다양한 방법으로 민원 처리에 따른 수수료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전자정부법」 제14조(세금 등의 전자적 납부) 행정기관등의 장은 다른 법령에서 세금,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 벌금, 과료 등을 현금, 수입인지, 수입증지, 그 밖의 형태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